

예 산 총 칙

2017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59,399,391	16,781,982
일반회계	473,001,823	14,190,055
특별회계	86,397,568	2,591,927
공기업특별회계	28,894,724	866,84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017,064	570,51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877,660	296,330
기타특별회계	57,502,844	1,725,08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013,500	60,40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173,637	65,209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280,000	8,40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841,213	25,23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00,000	6,000
도시개발특별회계	8,130,000	243,9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31,250	6,938
중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28,875,273	866,258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8,934,000	268,020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700,000	81,000
농어업발전기금특별회계	3,123,971	93,71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001,68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세), 특정목적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성립전집행)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